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6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민형배 • 이재관 • 이상식

김태년 • 박홍근 • 이정문

김원이 · 이수진 · 황정아

이기헌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 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 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 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법률 제 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소득자(主所得者)"를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 득자(副所得者)"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소득자(副所得者)"를 "부소득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	제2조(정의)		
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			
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u>주소득자(主所得者)</u> 가 사망,	1.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소득자(副所得者)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주소득자 또는 <u>부소득자(副</u>	6 <u>부소득자</u>		
所得者) 휴업, 폐업 또는 사			
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u>8.·9.</u> (생 략)	<u>9.·10.</u>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